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준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036

발의연월일: 2021. 8. 12.

발 의 자: 강준현·고영인·권칠승

김병기 · 남인순 · 오영환

이장섭 · 최혜영 · 홍성국

홍정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 에서 퇴소시키도록 정하고 있고,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 에 필요한 주거·생활·교육·취업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.

그러나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해야 하는 연령이 너무 어리고, 이들이 자립 후에 보호자 없이 홀로 겪게 될 정서적 외로움 등을 고려할 때 심리적·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을 24세로 상향 조정하고 자립 시 주거안정과 심리적·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

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1항, 제38조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 중 "18세"를 "24세"로 한다.

제3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범위"를 "범위, 제2항에 따른 주거시설 설치·운영"으로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거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	제16조(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
등)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	<u> 등</u>) ①
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	
호대상아동의 연령이 <u>18세</u> 에	<u>24체</u>
달하였거나, 보호 목적이 달성	
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·	
도지사,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	
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	
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	
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	
다.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38조(자립지원) ① (생 략)	제38조(자립지원) ① (현행과 같
	승)
<u><신 설></u>	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
	항제1호에 따른 주거지원을 위
	하여 주거시설을 설치・운영할
	<u>수 있다.</u>
$\underline{②}$ 제 1 항에 따른 자립지원의	<u>③</u>
절차와 방법, 지원이 필요한 아	
동의 <u>범위</u> 등에 필요한 사항은	<u>범위, 제2항에 따른 주거</u>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<u>시설 설치·운영</u>

•